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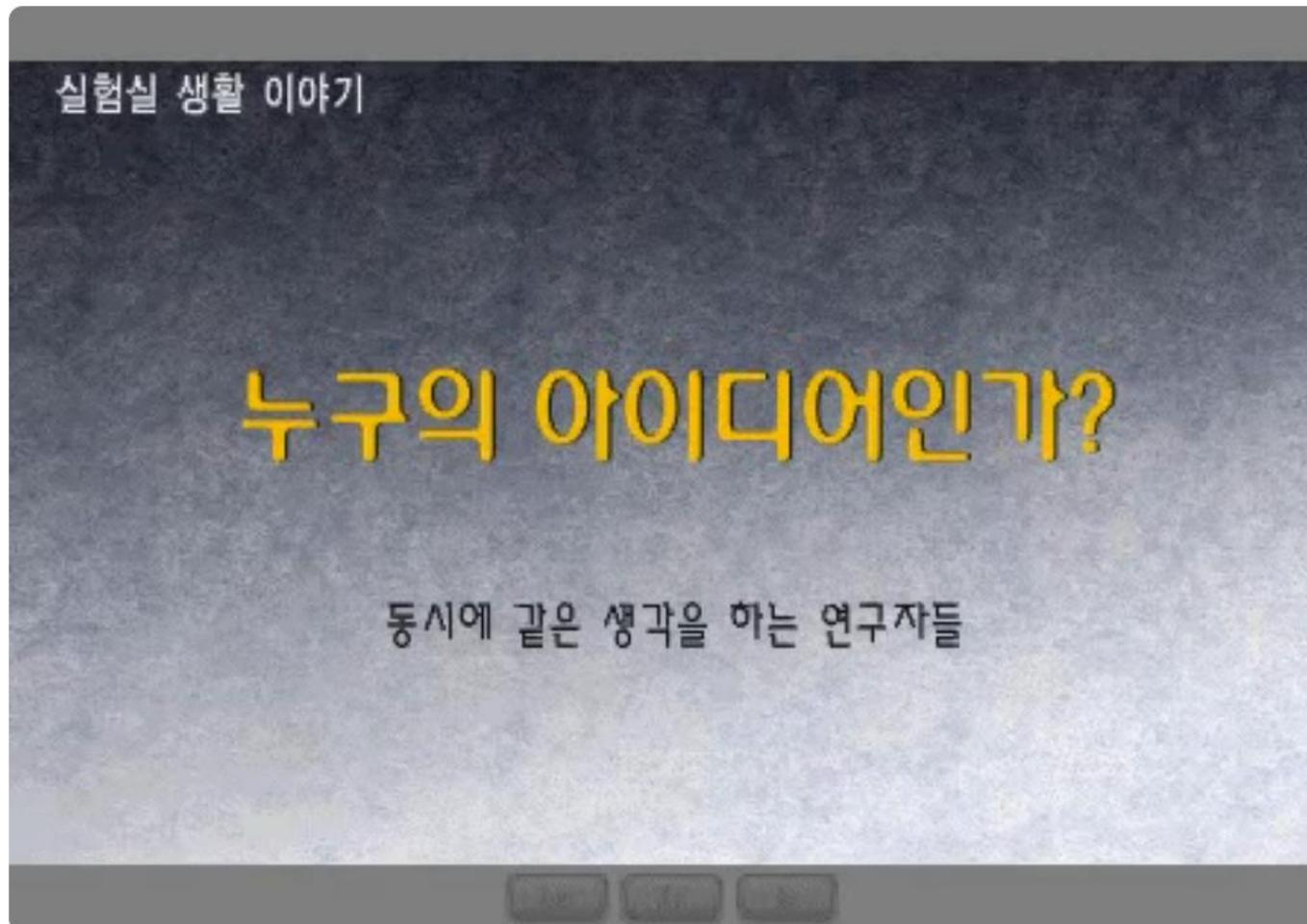
부적절한 저자 표기 사례 및 예방가이드

2025. 3. 30

비만대사연구학회

- 본 강연자료에 사용된 사진자료는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된 자료에서 선택한 것입니다.
- 파일을 소유하는 건 자유지만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무단 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MQV3bLT1CQ>



7)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연구윤리정보센터 좋은연구]

최근에 연구윤리에 대해 받은 질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입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연구윤리에 권위있는 전문가분께 첨언을 받고자 메일드렸습니다.

간단히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임상연구자와 여러차례 의견을 주고 받으며 연구를 진행하여 분석을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논문 작성의 진행상황을 확인했을 때 임상연구자로부터 해당 연구결과로 학위논문을 지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전에 논의된 바는 전혀 없으며, 연구가 마무리 되었을 즈음에 임상연구자에게 논문 지도를 부탁한 학생이 있어 해당 연구건으로 논문을 작성하게 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연구를 진행하면서 전공의(학위논문 지도 학생) 선생님과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가 분석한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후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

- 임상연구자와 여러차례 의견을 주고 받으며 연구를 진행하여 분석을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 논문 작성 진행상황을 확인했을 때 임상연구자로부터 해당 연구결과로 학위논문을 지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사전에 논의된 바는 전혀 없으며, 연구가 마무리 되었을 즈음에 임상연구자에게 논문 지도를 부탁한 학생이 있어 해당 연구건으로 논문을 작성하게 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 해당 연구를 진행하면서 전공의(학위논문 지도 학생) 선생님과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가 분석한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보내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선 **논문**작성시 저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없느냐에 대한 규정(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줄여서 의편집)와 대한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줄여서 과편집)의 윤리규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저자됨(authorship)

저자의 자격은 물론 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이다. 이러한 중요한 기여에는 1) 연구의 개념과 설계에 참여 2) 데이터 수집과 해석 담당 3) 발표 초안 작성에 참여 4) 발표 최종본 승인 등이 있다. 즉 저자의 자격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러한 기여 요소 들 중 모든 경우를 다 만족해야만 저자의 자격을 줄 것인가, 아니면 일부 요소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저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논문에 기술되는 저자의 선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갖는 경우가 많다. 저자 선정의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다기관연구에서도 저자되기의 기준은 만족되어야 한다. 또한 단체 저자로서의 논문(group author manuscript)을 제출 할 경우에는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표시해야 한다.

연구에 있어서 단순 재정 취득, 자료수집, 일반적인 감독의 역할인 경우에는 저자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 부분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의편집에서 발행한 <의학연구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25쪽

저자에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내용은 위 내용을 참고로 하면 되고, 단순히 다른 사람이 전해 준 데이터를 모아 **논문**을 작성한 사람은 저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학위 **논문**의 경우는 계획한 과제에서 1저자, 즉 저자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 중 가장 주도적인 일을 한 사람이 **논문** 저자가 될 수 있으며, 저자 결정은 지도교수(일반적인 **논문**의 경우에는 교신저자)가 해야 하고, 학위는 **논문**을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할 때는 지도교수가 교신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은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 내용이 같을 때이고, 내용이 일부 중복되고 서로 다르다면 <의학연구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다른 규정을 참고로 하면 됩니다.

예병일

책임있는 연구문화 확립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포털이 함께합니다.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NRF 캠페인



Q&A



교육자료



가이드라인



Home

연구윤리 상담

연구부정 신고

연구윤리교육포털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시스템

용어사전

연구부정 신고

🏠 > 상담·제보 > 연구부정 신고



신고 및 접수

이곳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신고된 내용은 신고자의 신원이 보호되어 처리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충실히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근거 없이 행해지는 타인에 대한 비방, 음해, 추상적인 개인주장 등의 ;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상세 안내서 [↓](#)

처리절차 안내 리플릿 [↓](#)

❷ 연구부정행위란?

✔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❸ 신고방법 및 수단

본 답변은 연구윤리 관련 일반적 견해 및 조언에 해당합니다. 개별 사례에 대한 해석 및 판정과 무관한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하신 것 처럼 향후에 학술지 출판과정에서의 여러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여러 사례가 공론화된적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 대한 옳고 그름 등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고려사항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와 관련한 이슈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째. 연구성과의 공로배분 문제 즉 저작권과 관련한 것 입니다. 연구기획 및 수행과정에서의 연구결과의 도출, 발표과정에서 각 연구진간의 역할과 책임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공로배분 즉 저작권 배분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 등재와 관련한 연구진 간의 협의 없이 논문의 출판을 진행된다면, 부당한 저자 표시 라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연구진의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의내용으로 예상해보건데, 당초 협의하였던 연구계획에는 없던 연결과의 사용과 관련한 추가요인(학위논문 지도에서 연구데이터 등 사용)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전 안내 및 협의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연구진 간의 동의 없이 연구데이터가 연구진 중 한명의 제자의 학위논문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학생을 지도하여 연구역량을 가진 후학을 양성해야 하는 지도교수로서의 역할과, 동료연구자와의 협업관계에 있으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연구자로서의 역할 간 이해상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문 연구자로서의 연구성과가 학위논문에서 사용되는 점은 대단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학위논문이라는 특성에서 발생하는데, 학위논문 자체가 미성숙한 학생이 지도교수의 도움을 얻고, 학생 자신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하며 결과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학습의 한 과정이라는 점과, 해당 연구결과를 온전히 학생이 인정받아 학위를 승인받는 형태라는 점입니다. 비슷한 사례를 예로 들자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도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수행 중에, 연구결과의 일부가 학위논문에서 먼저 수록됨으로 인한 연구결과물의 귀속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저작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지도교수는 학생을 지도한 기여도에 대한 학계의 공감대가 있으므로, 교신저자나 공동저자 등재에 큰 이슈가 없습니다만, 추가저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기여도를 저자 스스로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가저자가 실질적 기여 없이 저자로 등재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학술지 논문의 출처가 학위논문이라는 점 때문에 발생합니다.

반대로 당초에 진행해 오던 질의자분과 다른 연구진과의 학술지 논문을 먼저 출판하고, 후에 해당 연구결과가 학위논문에 수록된 경우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학술지 논문에서 학생이 저자로서의 등재여부 및 연구데이터 재사용 관련 학생이 재사용할 수 있는 기여나 권한을 가지는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연구결과의 적절한 사용 및 출판과 관련 연구진 간에 사용방법과 순서, 각 연구결과물의 출판방식을 연구의 주요 단계마다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학위논문에서의 연구데이터 사용은 학위논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여러 고려사항에 대하여 연구진간의 의사소통 및 합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참고. 연구 윤리 첫걸음 pp.41-44

링크

https://www.cre.re.kr/bbs/BoardDetail.do?nttlId=6228&bbsId=BBSMSTR_00000000098&pageIndex=1

총 72개

[2022]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한 길잡이 - KIRD, NRF

제작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제작년월 2022.03.

[2023]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2023 개정본) - 과기부, KIS...

제작 과기부, KISTEP
제작년월 2023.05.

[2022] 내 디자인을 지키는 이기적 학습윤리

제작 서경대학교 부설 디자인 연구소
제작년월 2022.08.

[2019] 출연(연) 연구자를 위한 부실학술활동 특징과 예방대책

제작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NST)
제작년월 2019. 04.

[2007]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 과기부, KISTEP

제작 과학기술부
제작년월 2007.

[2021] 학술지 실재점검 사례집 - NRF

제작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팀
제작년월 2022. 04.

[2022]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개정본 포함) - 과학기술장...

제작 과기부, KISTEP
제작년월 2022. 05.

[2021] 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 매뉴얼 - KIRD

제작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제작년월 2021. 06.

이러닝

전체

총 33개

- 

[[NRF지선·NND] 연구공동체 심화반
텐츠(인문사회계_교육학)
교육대상
NRF 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교육기간 2023-06-01 ~2023-12-31
- 

[[NRF지선·NND] 연구공동체 심화반
텐츠(인문사회계_언론정보학)
교육대상
NRF 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교육기간 2023-06-01 ~2023-12-31
- 

[[NRF지선·NND] 연구공동체 심화반
텐츠(인문사회계_사회학)
교육대상
NRF 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교육기간 2023-06-01 ~2023-12-31
- 

[[NRF지선·NND] 연구공동체 심화반
텐츠(인문사회계_생활)
교육대상
NRF 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교육기간 2023-06-01 ~2023-12-31
- 

[[NRF지선·NND] 연구공동체 심화반
텐츠(인문사회계_경제경영)
교육대상
NRF 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교육기간 2023-06-01 ~2023-12-31
- 

[[NRF지선·NND] 연구공동체 심화반
텐츠(인문사회계_역사학)
교육대상
NRF 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교육기간 2023-06-01 ~2023-12-31
- 

[[NRF지선·NND] 연구공동체 심화반
텐츠(인문사회계_행정학)
교육대상
NRF 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교육기간 2023-06-01 ~2023-12-31
- 

[[NRF지선·NND] 연구공동체 심화반
텐츠(인문사회계_통계학)
교육대상
NRF 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교육기간 2023-06-01 ~2023-12-31



연구윤리 교육 의무화 안내

- 근거

- >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종합계획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등

- 교육이수 의무화 안내

- > 교육부/과기부,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별 시행계획 및 협약에 따라 연구윤리 교육이수 의무화 적용
- > 교육대상 :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 이수방법 : 연구개시 후 3개월 이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연구윤리 교육과정(프로그램)을 이수

- 교육운영 기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 > 교육신청 홈페이지 : <https://alpha-campus.kr>
※알파캠퍼스 회원가입 시 연구자 본인의 '국가연구자번호' 반드시 입력
※본 NRF연구윤리포털은 콘텐츠 공동활용 신청기관을 위한 것으로 연구윤리 교육 의무화 과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교육운영 문의 : 1588-5834, e-kird@kird.re.kr

- 연구윤리 의무교육 과정(프로그램)

> 1. (이러닝)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한국연구재단,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19.10.01 >

논문은 연구성과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고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따라서 논문의 저자를 정당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은 건강한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본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는 대학 등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이 연구논문의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권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본 권고사항은 「한국연구재단」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간의 MOU(연구관리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 2019. 8. 29)에 근거하여 양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소개](#)

[회원가입 및 평가](#)

[데이터베이스](#)

[자료실](#)

[회원 공간](#)



주요 메뉴



소개

회원가입 및 평가

데이터베이스

자료실

회원 공간

Home / 자료실 / 발행물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3판

KAMJE 2019-08-21 10:52 23028

본 서적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출판윤리위원회의 주도로 편찬되었습니다. 내용은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회원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누리집에 등재하고자 하는 학술지 편집인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02-794-4146 / kamje@kamje.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적명: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3판

저자(가나다순): 권오훈, 김병일, 김수영, 김영학, 김유선, 김재원, 김증임, 김진석, 류판동, 박성호, 서정욱, 심승혁, 유소영, 유 영, 이은소, 조혜민, 최인홍, 한동수, 허선

발행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KAMJE)

발행일: 2019년 3월 28일

자료실

[발행물 »](#)

[참고자료](#)

[워크숍 자료](#)

[관련 사이트](#)

ISBN 978-89-93453-53-9 93510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
for Medical Journals

· 3rd Edition ·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 제3판



Session I: 연구윤리

편집인이 알아야 할 생명윤리(Bioethics)	1
동물실험윤리(Ethics on Animal Research)	5
이해관계(Conflicts of Interest)	11
인공지능 임상검증(Clinical Valid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연구 윤리	16
빅데이터(Big Data) 연구윤리	20
개인정보 보호(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25
위조/날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	28

Session II: 출판윤리

중복 출판(Duplicate Publication)	35
저자 자격(Authorship)	40
전문가 심사(Peer Review)	46
이미지 조작(Image Manipulation)	50
인용 조작(Citation Manipulation)	53

Session III: 저작권과 자료 공유

저작권(Copyright)	58
Creative Commons License 및 Open Access, 그리고 출판 윤리	64
임상시험 자료 공유(Data Sharing)	71
임상시험 등록(Clinical Trial Registration)	75

Session IV: 기타 윤리

특허 관련 윤리(Patent-related Ethics Issue)	81
가짜 학술지(Pseudo-Journal)	87
정정기사, 논문 취소(Correction, Retraction)	91
자료 보존, 광고와 홍보(Archiving, Advertising & Marketing)	94

부 록

잠재적 이해관계의 공개를 위한 ICMJE 서식	100
영국출판윤리위원회 흐름도	103
의학학술지에 게재되는 학술 저작물의 생산, 보고, 편집 및 출판에 대한 권고안	121
학술 출판에서 투명성 원칙과 처리 기준	148
학술지 논문 출판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고안	152

인공지능 임상검증(Clinical Valid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연구 윤리	16
빅데이터(Big Data) 연구윤리	20
개인정보 보호(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25
위조/날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	28

Session II: 출판윤리

중복 출판(Duplicate Publication)	35
저자 자격(Authorship)	40
전문가 심사(Peer Review)	46
이미지 조작(Image Manipulation)	50
인용 조작(Citation Manipulation)	53

Session III: 저작권과 자료 공유

저작권(Copyright)	58
----------------	----

저자 자격(Authorship)

저자 자격 관련 체크리스트

- 저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가?
- 저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처리방침은 무엇인가?
- 교신(책임)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로부터 저자 자격을 확인하고 서명을 받았으며, 논문 투고 사실을 이메일로 통지하였는가?
- 저자의 수와 순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는가?
- 저자 자격으로 인한 분쟁에 대처하는 자체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SECTION 1 (ONE ROLE REQUIRED):

- Conception and design
- Collection and assembly of data
- Data analysis and interpretation

SECTION 2 (REQUIRED):

- Manuscript writing

SECTION 3 (REQUIRED):

- Final approval of manuscript

ADDITIONAL INFORMATION ON ROLES NOT JUSTIFYING AUTHORSHIP (NOT REQUIRED):

- Financial support
- Administrative support
- Provision of study materials or patients

Recommendations

Disclosure of Inter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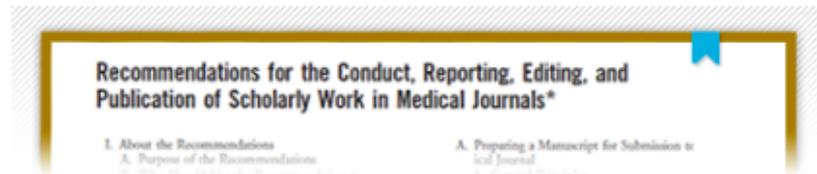
Journals

Stating That They Follow the ICMJE Recommendations

About ICMJE

News & Editorials

Recommend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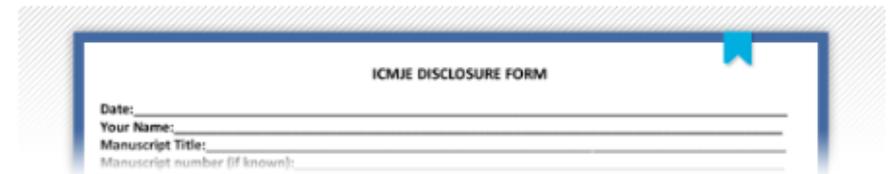


Read the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BROWSE

DOWNLOAD

Disclosure of Interest



Use the ICMJE form for Disclosure of Interests.

ACCESS THE FORM

ANNOUNCEMENTS

ICMJE Guidance Notice – February, 2025

Up-dated ICMJE Recommendations – January, 2025

Up-dated ICMJE Recommendations – January, 2024

Member Publications & Organizations



1. 저자의 자격 요건

1) 저자 자격에 대한 변화의 배경과 추세

저자의 자격 기준은 학술지나 단체마다 상이한 경우가 많다. Council of Science Editors (CSE)에서는 저자를 “저작물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이에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자신이 수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을 질 뿐 아니라 다른 공동 저자가 각각 자신의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참여 역할을 확실하게 구분하며, 모든 저자가 최종 원고를 검토하고 승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학계에서는 이전부터 많은 학술지가 국제의학학술지협의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의 권고 기준을 따라왔다. 2008년 개정된 ICMJE의 기존 저자 자격 기준에서는 연구에 참여하거나 논문 작성에 기여한 경우, 그리고 논문 최종본에 승인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저자 자격으로 인정해 왔지만, 논문 부정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자가 본인의 책임을 부인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ICMJE에서는 2013년 개정판을 발행하여, 이전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논문의 진실성을 책임지는 데까지 저자의 자격 기준을 확장하였다.

저자의 정의

- (1)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자료의 획득, 분석, 해석
-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
- (3)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
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할 것을 보증
하며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지는 것
에 동의

기여자 (non-author contributor)

저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자

- (1) 임상 조사자(clinical investigators)
- (2) 참여 조사자(participating investigators)
- (3) 과학 자문(scientific advisors)
- (4) 연구 계획의 정밀 검토
- (5) 자료 수집(collected data)
- (6) 대상 환자의 치료 및 자료 제공자

*guarantor: 논문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책임

특별한 저자의 예

편집인 입장에서 만나게 되는 저자 자격과 관련한 문제는, 많은 공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자에서 누락되었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저자로 표기된 경우, 일단 저자가 되었는데 논문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등이 있다. 부당한 저자됨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1) 초청 저자, 선물 저자, 유명 저자

초청 저자는 심사 중 혹은 출판 후 논문의 평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논문에 상당한 기여가 없는데도 저자로 표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선물 저자는 해당 분야의 대표나 원로를 그냥 저자로 기재하는 경우이고, 유명 저자는 저자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저자 리스트에서 누락되는 경우로, 제약회사 후원 논문 등에서 많이 관찰된다. 이러한 유형의 저자는 이전에 빈번하였으나 점점 줄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2) 사망 저자

공동 저자가 논문 작성과 투고 과정 중에 사망한 경우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을 통해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고 이를 표기하여야 한다.

“전공의 선생님이 영어논문 쓰신 걸 교정해 달라고 해서 봐 드렸는데 그 후로 영어 좀 한다고 소문이 났는지 다른 과 선생님들께서도 봐 달라고 하시는데 가끔씩은 시험 전날에도 연락이 온 적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에 이름을 넣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Q15 학술지 논문 투고 시, 제1저자(주저자)가 2명일 때 기술 방법이 궁금합니다.

q

▶ 2명이 함께 논문을 작성하고 있으며, 기여도가 같은 상황이므로 주저자를 2명으로 기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문의 사항은, 1) 주저자를 2명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2) 모든 학술지 또는 일반적인 기술 지침이 있습니까? 보통 주저자, 공동저자 순으로 이름을 기재하고 각주에 따로 표시하는 논문들을 볼 수 있는데, 복수 주저자에 대한 기재 방침이 있나요?, 3) 만약, 학회지마다 다르다면 각 학회지에 별도로 문의를 해야 하나요?

a

▶ 1) 제1저자가 한 명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학제 간 연구에서는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외국 저널들에서는 '공동 주저자' 또는 '공동 제1저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저자가 여러 명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못하게 보일 수 있지만 별표나 설명이 붙은 다른 기호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2) 논문에 실린 첫 번째 이름은 다른 저자보다 더 많은 가시성을 여전히 가지기 때문에 다수의 제1저자가 존재할 경우에도 여전히 가장 앞선 순서에 위치하는 것을 저자들이 선호할 수 있으므로 학회에서 이에 대한 기재 방침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주저자라고 하는 저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연락저자)에 한정하는 것이고 제1저자는 가장 앞선 위치에, 교신저자(연락저자)의 위치는 가장 마지막인 것이 일반적이지만, 각주에 따로 표시할 경우 교신저자(연락저자)의 위치는 제1저자 바로 뒤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각 학술지마다 복수 주저자에 대한 기재 방침이 있으니 이러한 학술지 편집양식(지침)을 준수하면 됩니다.
- 3) 공동 주저자를 인정할 것인가, 그 저자 순서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등은 개별 학회지마다 다르므로 별도로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자의 순서는 기여도 원칙에 따라 논문 초안과 연구에 가장 많이 기여한 저자가 제1저자가 되고 저자 그룹의 마지막 위치에 교신저자(연락저자)가 위치합니다. 제1저자 다음의 공동저자의 위치는 보통 기여도가 높은 순서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러나 특정 분야, 특히 대규모 그룹 프로젝트가 관련된 분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저자를 가나다순, 알파벳순으로 나열하기도 합니다.

Q17 논문의 제1저자, 제2저자, 교신저자 등을 분류하는 저자의 자격 기준 및 윤리 준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Q

- ▶ 저자의 기여도를 판단하는데 ① 연구의 기획이나 자료의 획득·분석·해석 등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② 원고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주요 내용을 결정적으로 고치며, ③ 출판될 원고를 최종 승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1저자(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 한 과제에서 작성한 논문인 경우 참여연구원 중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저자(주저자), 과제책임자가 교신저자, 과제 참여 연구원이거나 혹은 참여연구원이 아니어도 해당 논문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공헌도가 있으면 공동저자로 분류되는 것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a

▶ 저자의 기여도에 따라 저자의 자격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공동저자 간의 공동 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논문 초안과 연구에 가장 많이 기여한 저자가 제1저자가 되고 나머지는 기여도가 높은 순서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학문 분야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자 그룹의 교신저자는 연구책임자, 즉 해당 연구를 지도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연구책임자가 제1저자를 맡거나,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겸할 수도 있습니다. 교신저자는 연락저자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마지막”에 위치하고, 마지막 저자(교신저자, 연락저자)는 인쇄상의 기호와 각주를 통해 표시합니다. 마지막 저자의 중요성이 등장한 배경은 공동연구자 중에서 연구내용과 해석을 검토하도록 요구받는 수석 연구자를 정하고 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발생한 관행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공헌도가 있을 경우”는 공동저자이기보다는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언급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데이터 생산, 분석, 해석”이 매우 중요하고 연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공동저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 학문 분야, 융복합 연구 등에서, 대규모 그룹 프로젝트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저자를 가나다순, 알파벳순으로 나열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두고 규정이나 학술지 출판물에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Q18 학생의 학위논문이 차후에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되었는데 그 논문의 저자에 지도교수 이외 제3자가 추가되는 것이 무조건 연구윤리 위반이 되나요?

q1 ▶ 학술지 논문의 교신저자가 제3자로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학회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a1 ▶ 투고자의 소속이 같은 대학이고 학생과 교수의 공저자로 구성된 논문의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학위 논문이 아닌지 정보 검색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학회 편집책임자는 학위논문을 발췌하거나 발전시켜서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학술지 논문의 첫 페이지 논문 정보란에 관련 내용을 기입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내용이 상당부분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구성이 학생과 지도교수 2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학생과 제3의 저자 등 2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제3의 저자가 추가되어 총 3명의 저자로 구성된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의 접수를 거절하거나, 편집 및 수정 과정에서 게재 불가 처리하는 것이 연구윤리를 준수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본 사례는 교신저자가 제3자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 학술지에 제출한 논문이 학위논문과 상당 부분 다르고, 연구결과가 상이하고, 발전적이고 추가로 수정된 내용을 많이 포함하여 학위논문과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못할 정도이고, 지도교수는 학술지 논문 작성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교신저자를 지도교수가 아닌 제3자가 맡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술지 편집책임자의 판단하에 논문을 제출한 제1저자나 교신저자에게 지도교수의 사실 확인서(학위논문과 연관된 학술지 논문이 접수되었고 지도교수가 공저자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지 확인하는 내용의 문건)를 요구하여 받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q2

▶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투고 시 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가 교신저자, 학위논문의 심사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동저자로 표기된 교수가 부당한 저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내용은 전체적 맥락은 같으며 일부 내용이 수정과 보완이 있었는데, 공저자 교수는 본인이 이에 대한 기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제1저자와 교신저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저자표시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a2

▶ 원칙적으로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할 경우 제3의 저자가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례의 경우처럼 전체적 맥락이 같은데 일부 내용의 수정과 보완이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는 부당한 저자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학술지 논문이 단순히 학위논문을 발췌하고 요약한 논문이 아니고, 새로운 가설이나 데이터의 추가, 연구방법의 변경, 연구시사점의 수정 등을 근거로 추가된 공동저자의 역할이 인정되고, 모든 저자들이 이에 동의하므로 제3의 저자가 추가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술지 논문 편집책임자와 익명의 심사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Q19 가족 간 공동으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q

▶ 가족 간인 저자들의 전공은 다르나 연구 관심 분야가 같고 비슷한 주제의 연구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게재하여도 되는데, 부부간, 부모-자식 간 함께 공저자로 논문을 집필하는 것은 연구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닐지 의심이 됩니다. 또한 가족 간 저자 중 일부가 석사나 박사학위를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어느 선까지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해당 연구에 참여하였고 저자 자격을 부여할 만큼 충분하게 기여를 했다면, 그 신분이 가족이라도 공저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많은 연구기관에서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의 연구 참여와 논문 공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규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학술지도 이와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에 가족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소속기관 내규와 해당 학술지가 요구하는 사항을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명확한 근거나 증빙(연구노트 등)이 없이 가족을 논문의 공저자로 포함시켜 나중에 문제(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조사 진행)가 된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가족을 논문의 공저자로 포함시키기 전에 해당 가족이 충분한 저자자격이 있는지를 내용적·형식적 측면에서 잘 검토하기 바랍니다.

기쁘시.하소니다

